

교무부	도전 · 성취 ·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수성 교육	2020학년도
	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 안내	
우) 2814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601 교무실 043)214-0050 FAX 043)214-6265		

안녕하십니까?

그 동안 학생들이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고, 원격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5월 27일(수)을 시작으로 1,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게 됩니다. 따라서 안전한 등교수업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,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등교수업 유형: 학부모와 교직원의 설문 조사 결과 반영

가. 학년군 별 요일 차를 둔 병행수업 실시: **학년군별 주당 3일 등교 + 2일 원격수업으로 병행운영**

나. 등교 · 원격수업일

요일 \ 학년	월	화	수	목	금
1-2학년	원격	원격	등교	등교	등교
3-4학년	등교	원격	원격	등교	등교
5-6학년	등교	등교	등교	원격	원격

다.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,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 실시

2.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

단계	일정	등교대상
1단계	5.27.(수)	초 1-2학년
2단계	6.4.(목)	초 3-4학년
3단계	6.8.(월)	초 5-6학년

3. 학년별 등·하교 시각

가.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학년별 등교시각(하교 시각: 담임교사가 별도 안내 예정)

학년	등교일	시간	비고
1-2학년	수, 목, 금	8:35~9:00	반드시 본관현관에서 체온 측정 후 입실
3-4학년	목, 금, 월	8:20~8:35	
5-6학년	월, 화, 수	8:00~8:20	

※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등교시각 준수 협조

나. 방과후학교 운영: 2학기부터 예정

다. 긴급돌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

- 1) 1~2학년 긴급돌봄교실: 5월 26일(화)까지 운영하고 종료
- 2) 3~4학년 긴급돌봄교실: 6월 3일(수)까지 운영하고 종료
- 3) 5월 27일부터 학기 중 초등 돌봄교실로 전환 및 운영

4. 출결관리

가.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‘출석인정결석’ 처리

【 등교중지 대상 학생 】

대상	등교중지 기간	등교재개 요건	출결증빙 자료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	■ 보건당국에서 판단	입원치료 통지서 등 (보건소 발부)
의사학생	14일	■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	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■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	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자가격리학생	14일	■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	격리통지서 등 (보건소 발부)
	가족(동거인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■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	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유증상학생	3~4일	■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※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	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, 진료확인서

【 대상별 정의 】

- **확진학생**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의사학생**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·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
- **조사대상 유증상학생**
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
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자가격리학생**
 -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
 - * '20.4.1.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'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
 - ② 가족(동거인)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
- **유증상학생**: 37.5℃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·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

나. 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‘출석인정결석**’ 또는 ‘질병결석***’ 처리

* 보건복지부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
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*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관심, 주의” 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
※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활동 꾸러미를 제공함.

다. (기타 미등교학생)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,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‘기타결석*’ 처리
 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.

※ ‘심각, 경계’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‘출석인정결석’ 처리 가능

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라. (교외체험학습)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,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(3일 전까지 신청):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 을 포함

[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](충청북도교육청 시행 공문에 의함.)

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 을 포함하며,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
- 1) ‘가정학습’ 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(공휴일, 휴업일, 방학기간 제외)
- 2) ‘가정학습’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: 45일
- 3) ‘가정학습’ 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
- 4)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
- 5)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(주말, 휴일 제외) 까지 제출
- 6)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승인 여부 문자로 통지
- 7)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(학습결과물 포함) 제출
- 8) 양식은 학교홈페이지-공지사항- ‘공지’ 에 탑재되어 있는 ‘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’ 활용
- 9)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
- 10) ‘가정학습’ 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, 여행 불가

5.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2020. 5. 22.

수 성 초 등 학 교 장